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1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6일 오중석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오중석 의원)

1. 제안이유

가. 최근 마약 관련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마약 판매경로가 인터넷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마약 및 유해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및 성인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마약판매경로가 인터넷 등으로 다변화 되어 시민 및 청소년들이 유해약물 및 마약류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민 및 청소년에 대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 실태조사 및 마약류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등을 제공하고자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성인인 시민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임.
- 해당 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실태조사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태조사가 매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집행부가 따로 하는 경우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¹⁾²⁾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 그러나 보건복지부 2014년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표본은 인천 지역 746가구 936명(일반인)에 불과한 상황으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집행부가 이를 한다고 하여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할 것임.
 - 마약류의 사용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하여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으며 마약과 대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한적인 용도에서만 처방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임.
 - 투약 및 운반, 보관에 대하여서도 실행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법 제51조의3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 ② 법 제5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실태

- 서울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하고 있으며 매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실적과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	추진실적		
2016년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 : 22명(입원1, 외래21)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 166명		
2017년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 : 47명(입원3, 외래44)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 290명		
2018년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 : 73명(입원2, 외래71)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 124명		
2019년 7월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 : 22명(입원5, 외래17)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 14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6년	30,000	30,000	0
2017년	56,000	56,000	0
2018년	94,300	94,300	0
2019년 7월	150,000	77,657	72,343

- 이는 실질적으로 마약류 남용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상황임. 마약청정국이라 함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미 2016년 1만4천명의 마약사범이 발생하여 인구 10만명당 20명의 기준을 넘어섰으며 SNS를 통한 청소년 등의 마약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함.³⁾

3) 연합뉴스 “대한민국, '마약청정국' 명예 회복할까” 2017.3.8.

- 그러나 현행 조례가 치료보호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개정안과 같이 인구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실효성이 있도록 입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조례의 입법취지가 유해약물과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조례이고 이는 시민 중 청소년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의 입법취지로도 개정안의 제안취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함. 이러한 이유에서 아래와 같이 인구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⁴⁾ 및 제34조제1항제5호⁵⁾ 등 청소년 보호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여겨

4)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5)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4.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짐.

- 이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청소년에게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실태조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약물오남용의 예방이 최선의 치료정책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예방 및 실태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하는 등의 수정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임.

3 종합의견

- 청소년과 성인을 둘러싼 유해한 약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실태조사와 그 대상, 약물의 종류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881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3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마약류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4조제3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마약류 <u>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u></p> <p>4.·5. (생략)</p>	<p>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등-----</u> -----</p> <p>4.·5. (현행과 같음)</p>	<p>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 ----- ----- ----- ----- -----.</p> <p>1.·2. (개정안과 같음)</p> <p>3. <u>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u></p> <p>4.·5.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p> <p>4. 5. (생략)</p>	<p>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u></p> <p>4. 5. (현행과 같음)</p>